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조(목적) <기재생략></p> <p>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2. <기재생략> <u><신설 추가></u></p> <p><u>3 ~ 9. <기재생략></u></p> <p>②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u>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3조 (서비스 종류) 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의 신규 및 해지, 대출,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전자결제,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본지사통합관리, 전은행계좌관리, 통합자금관리, 모바일자금관리 등이며 은행은 필요한 경우 추가,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u>약관의 개정 절차</u>에 따라 1개월 공시 후 진행합니다.</p>	<p>제1조(목적) <좌동></p> <p>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2. <좌동> <u>3. “모바일통합인증”이라 함은 이용자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통해 간편 비밀번호(6자리 비밀번호), 패턴, 생체정보(생체에서 발생하는 얼굴, 지문 등의 정보, 이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기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 시 보안매체 및 은행이 정한 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단, 이용자가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용자 구분이 “단독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u> <u>4 ~ 10. <좌동></u></p> <p>②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u>기본약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3조 (서비스 종류) 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의 신규 및 해지, 대출,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전자결제,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본지사통합관리, 전은행계좌관리, 통합자금관리, 모바일자금관리 등이며 은행은 필요한 경우 추가,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u>제23조 약관변경 절차</u>에 따라 1개월 공시 후 진행합니다.</p>	<p>- 모바일통합인증 내용 추가</p> <p>-번호체하</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제4조~ 제5조 <기재생략></p> <p>제6조 (내부통제의 이용 및 범위)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u>서면으로</u>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신규지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5.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p> <p>제7조 (결재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는 <u>영업점에서 신규한</u>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거래를 결재하는 결재자를 지정하여 다단계 결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③ <기재생략></p> <p>제8조 (이용자 및 사용자의 확인) ① <기재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기업스마트폰뱅킹 : 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p>	<p>제4조~ 제5조 <좌동></p> <p>제6조 (내부통제의 이용 및 범위)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u><삭제></u>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신규지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5. <좌동> ② <좌동></p> <p>제7조 (결재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는 <u><삭제></u>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거래를 결재하는 결재자를 지정하여 다단계 결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③ <좌동></p> <p>제8조 (이용자 및 사용자의 확인) ① <좌동>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기업스마트폰뱅킹 : 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p>	<p>- 불필요 문구 삭제</p> <p>- 불필요 문구 삭제</p>
---	--	---------------------------------------

<p>(주민번호), 간편인증번호(6자리 숫자), 패턴인증 * 단, <u>간편인증번호 및 패턴인증인 경우 등록된 스마트폰의 단말정보와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단말정보가 일치하고, 입력항목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u> 2.기업인터넷뱅킹 : 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p> <p>제9조 (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사용자는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예금(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신규 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⑥ <기재생략></p> <p>제10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기재생략> 1 ~ 2. <기재생략> 3. 제5조 <u>③항 2호</u>에 의해 해지되는 사용자의 출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② <기재생략></p> <p>제11조 (자금이체한도) ① <기재생략> < 표1-1: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기재생략> < 표1-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p> <table border="1" data-bbox="208 1321 963 1369"> <tr> <td>거래이용수단</td> <td>보안등급</td> </tr> </table>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p>(주민번호), 간편인증번호(6자리 숫자), 패턴인증, <u>모바일통합인증.</u> * 단, <u>간편인증번호, 패턴인증, 모바일통합인증의 경우 등록된 모바일 단말정보와 이용하는 모바일 단말정보가 일치하고, 입력항목이 모바일 단말기에 저장된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u> 2.기업인터넷뱅킹 : 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p> <p>제9조 (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예금(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신규 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⑥ <좌동></p> <p>제10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좌동> 1 ~ 2. <좌동> 3. 제5조 <u>제3항 제2호</u>에 의해 해지되는 사용자의 출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② <좌동></p> <p>제11조 (자금이체한도) ① <좌동> < 표1-1: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좌동> < 표1-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p> <table border="1" data-bbox="996 1321 1751 1369"> <tr> <td>거래이용수단</td> <td>보안등급</td> </tr> </table>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p>-모바일통합인증 내용 반영</p> <p>- 문구 수정</p> <p>-형식 수정</p>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p align="center"><u>OTP발생기 + 은행이 정한 인증서</u></p>	<p align="center">1 등 급</p>	<p align="center"><u>OTP발생기</u> <u>+ (은행이 정한 인증서 또는 모바일통합인증)</u></p>	<p align="center">1 등 급</p>	<p>-모바일통합인증 반영</p> <p>- 불필요 문구 삭제</p> <p>-문구 삭제</p> <p>- 형식 수정</p> <p>- 형식 수정</p>
<p>② 이용자는 <u>영업점에서</u> 업체별 1일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업체별 1일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혹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별로 1일/1회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 <p>제12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기재생략></p> <p>제13조 (본지사통합관리) ① ~ ③ <기재생략> ④ 은행은 본사가 지사를 대신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사가 직접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u>인정하며, 지사는 본사나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u></p> <p>제14조 (전은행계좌관리) ①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1~2. <기재생략> 3. <u>전 1호, 2호</u>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여러 은행의 계좌 및 집금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 ④ <기재생략></p> <p>제15조 (기업자금관리) ①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1~3. <기재생략> 4. <u>전 1호, 2호, 3호</u>의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 서비스</p>	<p>② 이용자는 <u><삭제></u> 업체별 1일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업체별 1일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혹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별로 1일/1회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 <p>제12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좌동></p> <p>제13조 (본지사통합관리) ① ~ ③ <기재생략> ④ 은행은 본사가 지사를 대신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사가 직접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u>인정합니다.</u></p> <p>제14조 (전은행계좌관리) ① <좌동> ② <좌동> 1~2. <좌동> 3. <u>제1호, 제2호</u>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여러 은행의 계좌 및 집금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 ④<좌동></p> <p>제15조 (기업자금관리) ① <좌동> ② <좌동> 1~3. <좌동> 4. <u>제1호, 제2호, 제3호</u>의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 서비스</p>			

<p>5. 전 1호, 2호, 3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⑤ <기재생략> ⑥ 수수료 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유선 또는 e-mail 통지 후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p> <p>제16조 ~ 제19조 <기재생략></p> <p>제20조 (로그인 비밀번호 및 일회용비밀번호(OTP)의 관리)</p> <p>① ~ ② <기재생략> ③ 보안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보안매체의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고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서 보안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설 추가></p> <p>제 21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1. ‘기본약관’의 “제14조(거래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p>	<p>5.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⑤ <좌동> ⑥ 수수료 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유선 또는 e-mail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p> <p>제16조 ~ 제19조 <좌동></p> <p>제20조 (로그인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모바일통합인증의 관리)</p> <p>① ~ ② <좌동> ③ 보안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보안매체의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고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 보안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모바일통합인증을 위해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에 생체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정보 등을 포함한 모바일통합인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통합인증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기업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모바일통합인증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p> <p>제 21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유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하기로 합니다.</p> <p>1. ‘기본약관’의 “제14조(거래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p>	<p>- 형식 수정</p> <p>- 사전으로 의미 명확화</p> <p>- 문구 변경</p> <p>- 불필요 문구 삭제</p> <p>- 모바일통합인증 관리 내용 추가</p> <p>-안내문구 추가</p>
---	---	---

<p>2.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3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신설 추가></p> <p>제22조 ~ 제23조 <기재생략></p> <p><신설 추가></p> <p>제24조 (합의관할) <기재생략></p>	<p>2.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3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모바일통합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일치하지 않을 때</p> <p>제22조 ~ 제23조 <좌동></p> <p>제24조 (손해배상 및 면책) 손해배상 및 면책에 대한 사항은 기본약관을 따릅니다.</p> <p>제25조 (합의관할) <좌동></p>	<p>- 모바일통합인증 관리 내용 추가</p> <p>-내용 추가</p> <p>-번호체하</p>
--	---	--